

## 중국 농업세조례 폐지

중국은 2005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하여 농업세조례(農業稅條例)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6차 회의(1958년 6월 3일)에서 통과된 농업세조례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을 의미한다.

농업세조례의 폐지는 중국의 9억 농민이 2006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26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황량국세(皇糧國稅) 농업세와 고별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운 중국이 성립(1949년)된 이후 중국정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에서 농업세를 징수하였다. 1983년부터는 국무원은 농업세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세 이외에 농림특산농업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1994년에 이 농림특산농업세를 농업특산농업세로 개정하였다.

또한 목축업 자치구(自治區), 성(省)에서는 목업세(牧業稅)를 징수하였다. 그러므로 2005년까지 실행했던 농업세에는 실제로 농업세, 농업특산세, 목업세 등 3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농업세조례의 실행은 국가의 농촌정책을 관철하고, 국가와 농민의 분배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국가에서 필요한 양원(糧源)을 장악하는 것을 보장하고, 지방정권의 운영을 보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2004년부터 중국정부는 농업세를 감면하는 해농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약 8억에 달하는 농민들이 직접 그 혜택을 받았다. 29일에 표결에 의해 결정된 농업세조례의 폐지는 해농정책을 국가 법률로 상승시킨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업무위원회의 유관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국가에서 어떤 세법을 설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 전속된 입법권이며, 국무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경감 혹은 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국무원에서 이미 농업세의 감면을 결정하였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서만 농업세를 완전히 취소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농업세조례의 폐지는 농민이 더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이 상업 또는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세계 통일성에 유래하다.

자료: 중국농업정보망(<http://www.agri.gov.cn>)  
(리경호 [jinghulee@krei.re.kr](mailto:jinghulee@krei.re.kr) 02)3299-43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